

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57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혁신센터는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, 경제적 가치를 찾는 혁신적 시민들의 플랫폼인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의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사업명 : 서울혁신센터 운영
- 소재지 :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
- 시설규모 : 29개동 연면적 48,898.47㎡
- 운영인력 : 89명
- 위탁기간 : 3년(2021. 1. 1. ~ 2023. 12. 31.)
- 소요예산 : 7,823백만원(2021년)

나. 위탁사무

- 서울혁신파크 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- 서울혁신파크 내 혁신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-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·운영에 관한 사항
-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
-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다. 민간위탁 추진경위

- 최초 위탁
 - 위탁기간 : 2015. 4. 1. ~ 2018. 3. 31.
 - 위탁유형 : 예산지원형(시설형)
 - 선정방법 : 공모절차에 의한 적격자 심의
- 재위탁
 - 위탁기간 : 2018. 4. 1. ~ 2020. 12. 31.
 - 위탁유형 : 예산지원형(시설형)
 - 선정방법 : 공모절차에 의한 적격자 심의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마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찾는 활동단체를 지원·연계하기 위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

제12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혁신센터(이하 '혁신센터'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시장은 혁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,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사회혁신담당관 혁신파크팀 강윤애(☎02-2133-6324)